

[충청남도 조례 제5198호]

튼튼한 조례

충청남도
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

대표발의 | 홍기후 의원

“국방의 의무를
다하는
우리 청년 지키기”



충청남도의회
CHUNGCHONGNAM-DO COUNCIL

**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 덕분에
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음을
더욱 실감하는 요즘이죠?**



하지만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하듯
군복무를 하다가 상해 입는 경우도 많아
당사자와 가족들은 입영 통보를 받으면
먼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.



만약 **군 복무 중** 내가 다치거나 아픈
불상사가 갑작스레 생겨도
나를 지켜줄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요.



다른 걱정 없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하며,
한결 보람 있고 활기찬 군복무를
할 수 있지 않을까요?



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도내 청년들을
지키기 위해 충청남도의회가 준비했습니다.



임용 부사관과 소집 상근예비역,
의무 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포함해
군복무 중인 모든 충청남도 청년이라면
누구나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,
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
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’를 마련했습니다.



이 조례는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
청년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
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3 조

군복무 충남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
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

제 4 조

가입대상, 보험기간, 보장범위, 보장금액 등
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규정

제 5 조

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규정

제 6 조

매년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
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함

제 7 조

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사무의
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





국방의 의무라는 멋진 사명을 해내는
소중한 도내 청년들을 지켜 애항심을 높이고,
우리 도의 미래를 이끌
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
충청남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.

